



규정

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TWP-B206
제정일자	2007. 10. 01.
개정일자	2018. 02. 28.
개정번호	3
페이지	1/4

목 차

부칙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2007. 10. 01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승 인
직 책	담 당	교무처장	총 장
서 명			
일 자			




규정

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TWP-B206
제정일자	2007. 10. 01.
개정일자	2018. 02. 28.
개정번호	3
페이지	2/4

개정이력
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09. 01. 30.	- 1차 개정
2	2015. 04. 27.	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3	2018. 02. 28.	-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 위원 위촉 인원수 개선

	규정	문서번호	TWP-B206	
		제정일자	2007. 10. 01.	
	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28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연구 개발
2.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3. 기타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에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장으로 한다.<개정 2018.02.28.>

③ 위원회 위원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인사 포함하여 10인 이내에서 총장이 위촉 구성하며, 산업체인사의 구성비를 1/2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18.02.28.>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
1.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3.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

	규정	문서번호	TWP-B206	
		제정일자	2007. 10. 01.	
	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28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처 총장이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